

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영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 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8일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 -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하여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정함
3. 주요내용
 - 심사위원 수의 하한선을 정하고 심사위원회 간사 변경(안 제5조)
4. 의견제출
 -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
- 전 화 : 043)740-3035, FAX : (043)740-303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○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
○ 의견 제출자 주소 :

○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내”를 “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의사팀장”을 “의정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심사위원회) ① (생 략)</p> <p>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<u>이</u> <u>내</u>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<u>의사팀장</u>이 된다.</p> <p>③·④ (생 략)</p>	<p>제5조(심사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이</u> <u>상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<u>의정팀장</u>----- 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 권고사항 표준안 발췌

□「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」 표준안 (행정안전부)

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지방의회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○○시.도(○○시.군.구)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(이하 ‘심사위원회’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사위원인 지방의회의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시·도의회 9인(시·군·구 의회는 7인)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.

④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/3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⑤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

1.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
2.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
3.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

⑥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⑦심사위원회의 직능,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.